「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O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13일, 평창군수

O 회부일자 : 2019년 8월 22일 회부

O 상정일자: 제24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9년 8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환경위생과장)

가. 제안이유

- O 최근 폭풍, 지진, 산사태, 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피해 지역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복구 지원 대책 마련
- 지하수 관리 조례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가 삭제되어 이 조항과 관련된 별지별표 서식 삭제 정비

나. 주요내용

- O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조항에 '천재지변' 추가(안 제21조)
- O 조례 삭제에 따른 별지별표 서식 정비
 - 별지별표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피해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조항에 천재지변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u><신 설></u>	<u>1. 천재지변</u>
1. ~ 4. (생 략)	2. ~ <u>5</u> . (현행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